

ACI 카드뉴스

임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과 고려사항

November 21 , 2024



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?



- 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- ✔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활용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“ 본 카드뉴스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. ”

이사·감사위원의 감시의무와 상당한 주의 의무

감시의무



-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중 감시의무 有
-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
- 감사(위원)은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

고도로 분업화·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의 이사는 담당하는 업무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회사 업무 및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 의무가 존재

➤ 특히, 준법과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되도록 감시의무 이행

상당한 주의 의무

‘상당한 주의를 하였다’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갖는 주의의무나 감시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.^(*)

이사로서 충실하게 이사회에 참석하고 적절한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 의무 수행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.

(*): [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02146 판결]

이사·감사위원의 책임경감 요건 ‘상당한 주의’

‘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등을 알 수 없었음’을 증명한다면 이는 책임경감의 요건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. (*)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4조

...

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...

면책을 위한 요건은?



평시 활동

-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의 충실한 참석과 의견 개진
- 필요한 경우 경영진, 담당자, 외부감사인 대상의 구체적 질문과 적극적 자료 요청



면책 입증

-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 하였을 때의, 면책은 입증이 필요하며, 입증은 이사 당사자 부담임
→ 의사결정 과정의 주요 발언 내용 녹취 및 문서화
- 판단에 참고한 자료는 추후 증빙할 수 있도록 보관

(*): [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02146 판결]

임원배상책임보험

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꾸준히 도입·강화되고
임원에 대한 책임추궁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,
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


회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아래의 사항^(*)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✓ 가입근거를 정관 등으로 명확히 하고 가입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승인을 거칠 것을 권장
- ✓ 피보험자의 범위, 보상되는 손해, 보험회사의 면책범위, 보상한도를 구체화
- ✓ 계약 체결시 업종, 회사규모 및 노출된 위험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명백하고 개별화된 구체적 내용으로 결정

보상하는 손해

- 임원의 업무상 과실로 회사 및 제 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

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의도적인 사기행위, 임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
- 징벌적 손해 등

부정행위 관여 여부와 업무 관련성,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 여부
등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차등하여 산정^(**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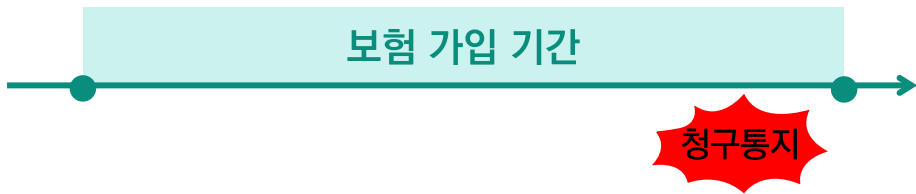
(*) 금융감독원, 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, 2005. 12. 6.

(**) 2021다279347(대법원 2022.5.12 선고)

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(1/2)

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
약관 상 정황 통지 조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약관 상 '정황 통지'(*) 조항 확인



임원배상책임보험은 행위 발생 기준이 아닌
청구 발생 기준으로 위험부담 기간을 보험기간 내로 제한

'보험기간 내 배상 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정황을 보험사에
서면으로 통지' 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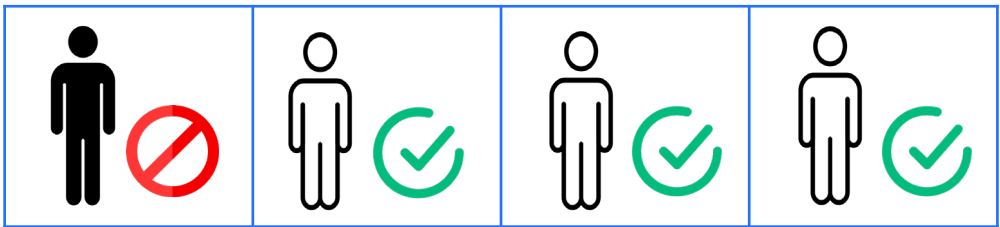
→ 정황 통지는 청구 근거를 명시하여 **상당한 구체성**을 갖춰야 함

(*)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다295377 판결

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(2/2)

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
약관 상 청약의 분리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약관 상 '청약의 분리'(*) 조항 확인



불법 행위 등을 알고 있는 일부 임원이 배상책임에 포함된 경우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전체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음

보험청약 시 '어떤 피보험자의 개인 신고서 상의 진술이나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 다른 어떤 피보험자에게 전가되지 않는지' 확인 요망
→ '청약의 완전 분리 적용'

이 외에도 주주 대표소송의 보상 포함,
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지급조건 등의 약관 검토가 필요합니다.

(*)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다295377 판결